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3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의자 : 박윤옥, 이경숙, 김현택,
전혜연, 이수련, 한근수,
김동훈, 박경원, 이진환

1. 제안 이유

은둔형 외톨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발굴하여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 및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 라.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
- 마. 지원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제11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계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제7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누구든지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 또는 알고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시 관련 부서에 이를 알릴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자료를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7.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27.>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유사 사업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추계는 어려우나, 최근 3개년 관련 사업의 증감액을 고려했을 때,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

※ 참고 (관련 지원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부 기 명	예산현황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연평균	2026년	2025년	2024년	
		증감액				
	합 계	3,500	97,920	37,920	20,000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국비50%도30%시2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사업	3,500	90,000	30,000	20,000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시100%)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0	7,920	7,920	-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안부확인을 위한 사업비

4.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